

#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1,309,295	12,039,279
일반회계	365,446,220	10,963,387
특별회계	35,863,075	1,075,892
기타특별회계	35,863,075	1,075,892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66,000	19,9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5,423	15,163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129,727	63,892
기반시설특별회계	81,212	2,436
섬진강댐특별회계	11,600,000	348,000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3,342,880	100,28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609,236	498,27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8,597	27,858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881,628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